

# 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 ACI Insight

Special Report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위원회]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의 의의와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②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보장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 ③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및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 Beyond Data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지원조직 공시 현황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과 상장법인 참여 현황 - 새로이 공개된 감사기구 정보 중심

## Case Study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 Global ACI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이사회 구성원 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2017 Global CIO Outlook: Navigating Uncertainty  
불확실성 시대에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CIO

## ACI News

제3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Vol. 04 | October 2017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

# 인사말

---

삼성KPMG CEO 김교태

안녕하십니까.

삼성KPMG 대표이사 김교태입니다.

삼성KPMG는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를 설립한 이래,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국내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사위원회 제도 및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 3회 삼성KPMG 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ACI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규가 제·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감사위원회 저널」 4호에서는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심의·가결되고 10월 31일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회계투명성 확보는, 기업 내부의 통제장치(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 외부의 독립적 감독장치(외부감사인)와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내부고발제도)가 모두 균형 있게 개선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특집의 내용을 구성한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저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향된 시각을 벗어나 객관적 입장에서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김 교 태



# CONTENTS



## ACI Insight

### Special Report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위원회]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의 의의와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05
- ②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보장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15
- ③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및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23



## Beyond Data

-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지원조직 공시 현황 32
-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과 상장법인 참여 현황 - 새로이 공개된 감사기구 정보 중심 36



## Case Study

-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41



## Global ACI

-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이사회 구성원 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44
- 2017 Global CIO Outlook: Navigating Uncertainty 불확실성 시대에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CIO 47



## ACI News

- 제3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50





## Special Report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위원회]

1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의 의의와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삼성KPMG ACI

- 지난 9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이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될 예정임
-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내부에서 상시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무정보의 생성과 기록의 전 과정이기에, 동 제도와 관련한 내부감사기구(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
- 본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의 상향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와 이와 관련 강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함

## 논의의 배경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數) 건을 종합한 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외감법')(\*)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0월 31일 공포됨

- 개정 외감법은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감사품질 제고, 부정회계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음

(\*) 개정 외감법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임

■ 외감법 전면개정을 맞이하여 상시적 회계감독과 내부통제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금번 저널에서 특집(Special Report)으로 다루고자 함

- 회계투명성 확보는, 기업 내부의 통제장치(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 외부의 독립적 감독장치(외부 감사인) 및 임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내부고발제도)가 모두 균형 있게 개선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특집에 담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 표1. 「감사위원회 저널」 4호 Special Report 목차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의 의의와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②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보장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 ③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및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 본고에서는 우선 개정 외감법 내용 중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핵심인,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이것이 기업과 감사위원회에 미칠 영향과 이와 관련 강화되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검토해 볼 예정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태동 배경과 법 개정의 취지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함<sup>1)</sup>
-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이하 ‘SOX’) Sec.404에 따라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이하 ‘ICFR’)의 효과성을 경영진이 평가하여야 하고<sup>2) 3)</sup> 이러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sup>4)</sup>를 수행하여야 함
  -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재무보고의 품질 및 재무제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ICFR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회사가 부정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sup>5) 6)</sup>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8항

2) 회사의 ICFR에 1개 이상의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회사의 경영진은 ICFR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됨. 만약 회사의 임원이 ICFR 상 중대한 결함·취약점·부정사안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외부감사인이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SOX Sec.404.(a)

4) SOX Sec.404.(b): 여기에는 ‘audit(감사)’ 대신 ‘attest(입증)’라는 용어가 사용됨

5) SEC, “Management’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Certification of Disclosure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Release No.33-8238, 2003.6.5

6) Office Of Economic Analysis of SEC, “Study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Section 404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2009.9

-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이하 'PCAOB')는 ICFR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 평가를 외부감사인 이 감사할 때 참고하여야 할 원칙과 지침을 2007년에 공표함<sup>7)</sup>

■ 국내에서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기업의 부실위험 조기 파악을 위하여, 2001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sup>8)</sup>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평가를 의무화하였고, 2003년부터 외감법에 항구적으로 법제화함<sup>9) 10)</sup>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2005.6 제정)과 적용해설서(2005.12 제정)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발표함
- 국내에서는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가 아닌 검토만 수행하다 보니, 외부감사인은 물론 감독당국도 동 제도의 효과성 및 그 효과성에 대한 회사(경영진)의 평가에 대해 철저히 감사 또는 감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상당 부분 차용하였음에도 미국과 달리 분식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일본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상향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으며, 마침내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게 된 것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 외감법 주요 내용

- 금번 개정 외감법에 담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은 크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의 인증 상향과, 제도의 운영실태를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 두 가지임

7) PCAOB,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2007.6.12

8)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제정되는 법률로서, 2001년 제1기 기촉법 이래 2007년·2011년·2014년·2016년에 각각 새로이 제정됨

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2007.7

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명시한 외감법 제2조의2와 제2조의3이 신설된 것은 2003년 12월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5년부터임

표2.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외감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외감법										
조항	제2조의3	제8조 제6항										
인증 수준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Review)’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Audit)’										
적용 대상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법인에 한해서만 적용</li> <li>•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에 차등을 둠</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산총액</th> <th>적용시점</th> </tr> </thead> <tbody> <tr> <td>2조원 이상</td> <td>2019년 감사보고서</td> </tr> <tr> <td>5천억원 이상</td> <td>2020년 감사보고서</td> </tr> <tr> <td>1천억원 이상</td> <td>2022년 감사보고서</td> </tr> <tr> <td>상장법인 전체</td> <td>2023년 감사보고서</td> </tr> </tbody> </table>	자산총액	적용시점	2조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	5천억원 이상	2020년 감사보고서	1천억원 이상	2022년 감사보고서	상장법인 전체	2023년 감사보고서
		자산총액	적용시점									
		2조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									
		5천억원 이상	2020년 감사보고서									
1천억원 이상	2022년 감사보고서											
상장법인 전체	2023년 감사보고서											

표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감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외감법
조항	제2조의2 제4항	제8조 제4항
보고 주체	내부회계관리자	회사의 대표자
보고 대상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b>주주총회</b> ※ 단,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의 2017 회계개혁 TF는 2018년 2월에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sup>11)</sup>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분식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되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생성되고 부정에 대한 조기 적발이 가능해져 분식의 위험이 감소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온 국내에서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회계법인·정부가 합심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2017.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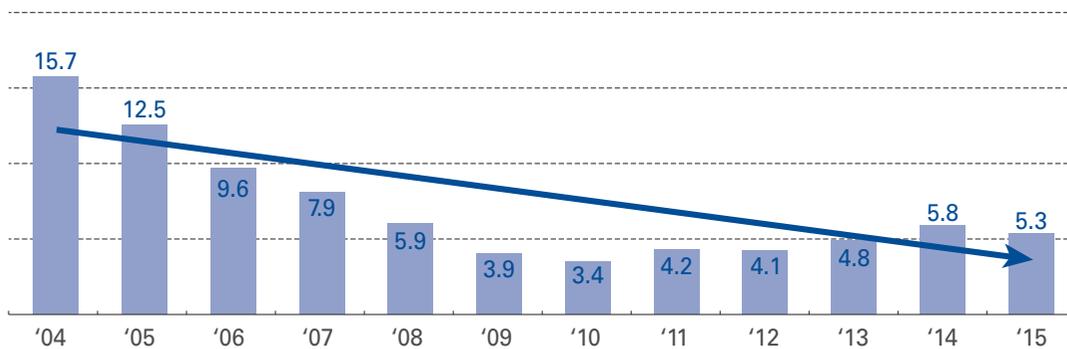
답자의 46%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함<sup>12)</sup>

-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온 미국에서는, 약 3,000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SOX를 통한 감사 강화가 ICFR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달함<sup>13)</sup>
-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가 협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분식 예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송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비적정 의견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기업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임

- 현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가 절차적·형식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위주로 검토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적정 의견이 전체 국내 상장사의 3.2%에 불과함<sup>14)</sup>
- 반면, 미국은 2002년 SOX 도입 직후, 즉 ICFR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직후인 2004년에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율이 15.7%에 달하였음<sup>15)</sup>
  - 11년이 지난 2015년에는 동 비율이 5.3%로 크게 감소함
  - 이와 대조적으로, ICFR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즉, 경영진만 이를 검토하는) 소규모 상장사 중 ICFR에 중대한 취약점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2007년 30%에서 2014년 40.5%로 증가하였음<sup>16)</sup>

■ 그림1. 미국 상장법인 ICFR 비적정 의견 기업 비율 (%)



12) 한국회계학회, 박종성 교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2016.12  
 13) SEC, “Study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Sec.404\_ICFR Requirements”, 2009.4  
 14) 이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2008~2013)”, 2014  
 15)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Twelve Year Review”, 2016.9  
 16) 각주 15와 동일

- 국내 상장법인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현재의 3% 수준에서 (미국이 ICFR에 대한 감사를 도입한 직후 수준인) 15%까지도 증가할 수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비적정 의견 표명 시 현재 회사에 가해지는 제재는 증선위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것<sup>17)</sup>인데, 최근의 법개정 동향을 볼 때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입법될 가능성도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이 감사위원회에 미치는 영향

- **(법적 요구사항)** 현행 외감법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정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개정 외감법에도 변경 없이 이관됨<sup>18)</sup>
  - NYSE<sup>19)</sup> 상장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책무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과 외부감사인과 함께 내부통제 상의 이슈를 논의할 것을 명시함<sup>20)</sup>
  - SOX에는 회계처리,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감사 이슈 등에 대해 제기된 불만사항을 감사위원회가 보고 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sup>21)</sup>
- **(법적 제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위원)에 부과 가능한 처벌의 수위는 변화가 없으나, 분식회계 발생 시 감사(위원)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처벌은 현행 대비 개정 외감법에서 대폭 강화됨
  - 분식회계와 관련해 감사(위원)을 포함한 임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징역 및 벌금의 상한이 높아졌으며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신설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항 위반 및 분식회계 발발 시 제재 대상에는 회사, 경영진, 외부감사인도 물론 포함되나, 아래 표에서는 감사(위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제재만 다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주된 책임은 대표이사에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이나 분식회계 발생 시 부과되는 아래 제재들은 감사(위원) 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임**

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5호

18) 현행 제2조의2 제5항, 개정 외감법 제8조 제5항

19) New York Stock Exchange: 뉴욕증권거래소

20)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b).(iii)

21) SOX Sec.301.(m).(4).(A)

표4.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접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 (개정 전후 차이 없음)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조항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제20조 제2항 제1호, 개정 외감법 제41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 제20조의2 제1항 <sup>22)</sup> , 개정 외감법 제47조 제2항 <sup>23)</sup>

표5. 분식회계 발생 시 제재 외감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외감법
조항	제16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5조
신분 제재	해임 권고	해임 권고,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징역	7년 이하	10년 이하 <sup>24)</sup>
벌금 <sup>25)</sup>	7천만원 이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 <sup>26)</sup>	-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까지 부과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의 10%까지 부과
몰수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몰수

■ **(감사위원회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되고 분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자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음

- 현행 법률과 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2)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회사)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으나,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동 표에서는 제외

23) 상동

24) 징역에 처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함 (개정 외감법 제48조)

25)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재산형의 일종

26)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표6. 현행 법규별 요구· 권고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역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 (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11.2항, 28항, 29항, 61항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받는 한편,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영진의 이행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18항

감사위원회는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라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의 이사회 보고
-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미비점이나 취약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이사회와 경영진에 있더라도, 감사위원회 또한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됨

- Audit Analytics는 취약한 ICFR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회계실무인력의 역량· 교육 부족, 통제 의무와 구조 간 괴리 등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부재 또는 비효율성’을 언급함<sup>27)</sup>
-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은 SOX의 긍정적 영향 중 하나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개입의 증가를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로 SOX 덕분에 이사로서의 책임·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감사위원회 회의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안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점을 제시<sup>28)</sup>
- 재무이해력,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등기임원이라는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감사위원회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현행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회계관리규정 점검: 최고경영자의 역할 등 법적 요구사항 반영

27)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Twelve Year Review”, 2016.9

28) HBR, “The Unexpected Benefits of Sarbanes-Oxley”, 2006.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의 구조와 업무분장 점검: 인증 강화에 대응하여, 향후 진행될 내부회계 관리제도 테스트 및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위한 충분하고 적격한 인력 확보 및 조직 체계 구축 필요 (특히, 테스트 수행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감사실무조직의 역할 강화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서화(\*) 수준 점검을 통한 최신화 및 내부통제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 최초 구축 이후 변화된 규정, 조직 및 업무분장, 업무절차 및 IT 인프라가 문서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중요 계정과목의 왜곡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통제목표, 통제활동 및 테스트 절차’가 적절히 구비 되었는 지 점검

**(\*) 업무기술서(Narrative), 업무흐름도(Work Flow), 통제기술서(Risk Control Matrix)**

- 신규 회계기준 도입(IFRS15 등)에 따른 관련 업무절차의 변경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 지 점검
- 핵심감사제도 도입에 따른 핵심감사항목(Key Audit Matter)에 대한 내부통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 지 점검

**맺음말**

- 감사위원회가 회계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임
- 물론 경영진·외부감사인·감독당국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유의미해질 것임
  -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재무정보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었는 지와 같은 형식적 검토·감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간과하였을 수 있는 제도 상 취약점을 색출하고 동종업계 우수관행을 능동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함
  -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또한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올바르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감리의 빈도를 높여야 함
    - PCAOB의 조사에 따르면, ICFR 감사 결과 취약성이 발견된 기업의 비중이 2010년 15%에서 2013년 39%로 증가하였음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을 인지하고, 관련 주체 모두가 협업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함

[부록] 미국 ICFR 제재 사례

MHR 사례 (2016) <sup>29)</sup>	
기업명	Magnum Hunter Resources Corporation (약자: MHR, 석유 · 가스 발굴 및 처리업, 텍사스 주재)
제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벌금 \$250,000 (한화 약 3억 원)</li> <li>● 전직 CFO Ronal Ormand: 벌금 \$25,000 (한화 약 3천 만 원)</li> <li>● 전직 고문 Joseph Allred: 벌금 \$15,000 (한화 약 1,800만 원)</li> <li>● 전직 수석회계임원 David Krueger &amp; 외부감사 파트너 Wayne Gray: SEC 상장회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음, 상장회사의 재무보고나 감사 업무에 참여 금지</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HR(회사)과 두 명의 임원(전직 CFO, 전직 CAO<sup>30)</sup>)은 ICFR 기준을 적절히 평가하고 적용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MHR이 중대한 취약점이 없다는 부적절한 결론을 내림</li> <li>●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견된 내부통제의 미비점이 중대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의 성격임에도 중대한 결함(Significant Deficiency)<sup>31)</sup>로 평가한 오류를 범함</li> <li>● 또한 MHR의 전직 고문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파트너에 대해서도, MHR의 내부통제 상 결함의 심각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고 내부통제의 결함과 취약점을 평가하는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한 혐의를 물음</li> <li>● 덧붙여, MHR은 당사의 ICFR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음을 공시하지 않음</li> </ul>
QSGI 사례 (2014) <sup>32)</sup>	
기업명	QSGI (컴퓨터 장비 판매 및 보수업, 플로리다 주재)
제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CEO Marc Sherman: 벌금 \$7,500 (한화 약 900만 원)</li> <li>● 당시 CFO Edward L. Cummings: 벌금 \$23,000 (한화 약 2,700만 원), 5년 간상장회사 임원 취업 금지, 최소 5년 간 상장회사 및 기타 SEC 규제 하의 기관에서 회계사로서의 직무 제한</li> </ul>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FR에 대해 외부감사인 및 투자자에게 허위공시한 혐의</li> <li>● QSGI의 CEO Marc Sherman과 전직 CFO Edward L. Cummings는 2008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ICFR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서에, 실제로는 Sherman이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였다고 거짓 공시</li> <li>● 또한 두 임원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통제 상 모든 중대한 결함(significant deficiencies)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재고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숨겼던 것으로 나타남</li> <li>● 뿐만 아니라 두 임원은 회계조작을 통해 일부 재고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함</li> </ul>

29) SEC Press Release, "SEC Charges Company and Executives for Faulty Evaluations of Internal Controls", 2016.3.10

30) Chief Accounting Officer

31) Significant Deficiency는 ICFR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Material Weakness보다는 중대성이 떨어지지만 회사의 재무보고 감독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은 중요한 사항을 말함 (AU Section 325)

32) SEC Press Release, "SEC Charges Company CEO and Former CFO With Hiding Internal Controls Deficiencies and Violating Sarbanes-Oxley Requirements", 2014.7.30

## Special Report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위원회

#### 2

#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보장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삼성KPMG ACI

- 현행 자유수임제도 하의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은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수임 과정 중 발생하는 외부감사인 간 저가경쟁으로 외부감사에 필요한 감사시간이나 인적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고에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투입 시간 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외감법(① 감사인 선임 및 시간·보수 결정 권한의 변경 ② 지정감사제도의 확대 ③ 표준 감사시간 도입) 상의 내용을 소개함
- 법 개정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위한 제반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감사기구(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활동보장을 위한 법 개정 내용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 앞서 언급했듯이, 금번 개정 외감법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 내부의 통제장치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외부의 감독장치로서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 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시간 및 보수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에 부여함
- 둘째,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함. 즉, 주기적 지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의 직권 지정제

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품질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셋째, 외부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감사시간이 현저히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함

표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활동 보장을 위한 주요 법 개정 내용

목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활동 보장 방안
내용	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시간·보수 결정 권한 변경: 기존에 경영진에게 부여된 권한을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 <sup>1)</sup> 로 이전 ② 지정감사제 확대 - 주기적 지정제 도입: (6년) 자유수임제 + (3년) 지정감사제 - 직권 지정제 확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표준 감사시간 미달 등 지정사유 확대 ③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 한국공인회계사회 마련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하여, 표준 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 부과

표2. 법 개정으로 인한 외부감사인 선임과 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결정 권한의 변화

제도	방식	선임	보수	감사투입시간
	자유수임제		감사위원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경영진)
지정감사제 <sup>2)</sup>		증권선물위원회 (상동)	감사위원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경영진)

방식 : 개정 후(개정 전)

\*Source: 삼정KPMG ACI(경영진)

■ 법 개정에 따른 선임 방식 변화로는, 외부감사인 선임 결정 주체가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기에, 이들 선임 과정에서 불거졌던 회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음

-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도 큰 변화가 있으며,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종결하여야 함**
  -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관련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정감사제는 기존 존재하던 직권 지정감사제 외에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신설되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회계부정 등 이슈와 관련한 감독기관(정부)의 감리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가 선정함

2) 지정감사제는 기존 존재하였던 직권 지정감사제와 신설된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포함함

한 앞선 영향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지정감사제 비율도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됨

-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상장법인에 외부감사인이 직권 지정된 비율은 8.4%<sup>3)</sup>에 불과하였으나, 직권 지정 대상 회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새로이 추가 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sup>4)</sup>
  - 기존의 직권 지정감사제는 대상 회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한 경우, 주주가 감사위원회 지정을 요청하거나, 과거 3년 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되는 등의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한 표준 감사시간(신설)에 현저히 미달되는 회사 등이 추가되며,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됨
  -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동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최초 6년은 회사가 자유로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나, 6년 이후 3년은 직권 지정감사제처럼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함
- 다만, 지정감사제(직권·주기적)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외부감사인의 보수와 활동 시간 논의 등은 회사의 감사 내지 감사위원과 함께 하여야 함
  - 이를 감안한다면 감사 내지 감사위원의 역할론 정립은 필수적이며, 회사 역시 외부감사인이 지정(회계부정이나 거버넌스 이슈 혹은 기타의 사유 등)되어 뒤따르는 평판 훼손 방어를 위해 다각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감사인 선임절차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제10조 제4항)

표3. 감사인 선임절차 관련 법 개정 전/후 요약

개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을 선임 시 회사 내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는 단순 ‘승인’만 실시</li> <li>- 최종 선임은 회사 경영진에 의해 결정되기에 외부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보존이 어렵고, 절차 등의 상세 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저하</li> </ul>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양</li> <li>-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li>-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신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종결하여야 함으로, 감사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조기 확립할 필요가 있음</li> </ul>

■ 현행은 외부감사인 선임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최종 선임은 회사 경영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임. 이에 외부감사인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3) 이데일리, “선택지정제 도입시 지정감사 대상기업 1% 증가에 그쳐”, 2017.09.18

4) 주기적 지정감사제 대상 바로미터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하는 지배구조 등급(취약, C등급)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절차 등의 공개가 별도 규정된 바 없었기에,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모범 사례 구축 및 외부감사인 간 경쟁에 있어 보수 외의 차별화된 요소를 발굴하는데 제한됨

■ 개정 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을 결정짓는 주체는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불거졌던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이 가능해졌음

-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도 변화가 있었는데, 개정에 따라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마무리해야 함
  - 따라서, 자산2조원 이상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조기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 미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재를 경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개정 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주관하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정보들은 한국거래소가 2017년 3월 도입한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됨<sup>5)</sup>
  - 금년 처음 실시된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참여한 몇몇 기업은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보고서 내 기재하고, 기존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기준 등을 보고 [부록]과 같이 마련함

지정감사제와 감사위원회 역할(제11조)

표4. 지정감사제 관련 법 개정 전/후 요약

개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자유로이 진행</li> <li>- (제한적 직권 지정감사제)거버넌스 이슈 및 회계부정이 있는 회사에 한정하여, 외부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직권 지정됨</li> </ul>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권 지정감사제 강화) 기존 지정 사유와 더불어 표준 감사시간에 비해 감사시간이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직권 지정됨<sup>6)</sup></li> <li>- (주기적 지정감사제 신설) 최초 6년은 자유롭게 선임.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 앞선 6년 동안 회사에 별다른 회계부정 및 감리 지적사항이 없다면 제외<sup>7)</sup></li> <li>- 지정감사(직권·주기)에 해당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의 보수와 활동 시간 등은 자유수임제와 동일하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관여함</li> </ul>

5) 동 제도의 10대 원칙은 '감사위원회 및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용은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기에, 감사인 선임절차 또한 해당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히 공개될 필요가 존재함

■ **현행 외감법 상에서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계약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이해관계에 따른 ‘갑을(甲乙)’분위기가 팽배하며, 이러한 회사의 감사 구매 영향력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은 독립성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

- 기존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승인’하는 수준이었음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거버넌스 및 회계부정 이슈가 존재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정과 재계약에 영향력이 제한됨
  - 따라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보수 결정 그리고 재계약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유수임제를 ‘선택’하고자하는 경향이 있음

■ **개정 법에 따르면 기존 유지되던 직권 지정감사제 외에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새로이 추가되며, 양 제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비율은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법인이 최초 6년은 기존과 같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나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임. 다만, 최근 6년간 감리 결과가 문제가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제에서 제외됨

■ **법 개정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선임의 실질적인 권한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부여되므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계약 전반에 있어 이들의 위상 제고가 기대되며, 관련한 절차 정립과 결과의 투명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함**

- 회사 또한 주기적 지정감사제 제외에 해당되려는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자유로이 선임하는 최초 6년의 기간 내 회계 부정 등 부정적 이슈 억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정감사제(직권·주기적)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외부감사인의 보수와 활동 시간 논의 등은 회사의 감사 내지 감사위원과 함께 하여야 함
  - 즉, 법 개정으로 인해 감사 내지 감사위원의 역할 정립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 역시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6) 2019년도부터 적용

7) 2020년도부터 적용

## 표준 감사시간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제16조의 2)

표5. 표준 감사시간 관련 법 개정 전/후 요약

개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표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li> <li>- 자유수입제의 영향으로 외부감사인의 적절한 수준의 보수가 확보되지 않기에, 앞선 영향을 받은 감사투입 시간 등도 비례하여 제한됨</li> </ul>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정 지을 수 있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 감사시간을 마련</li> <li>-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현저히 못 미치면 지정감사 대상 요건에 포함</li> <li>-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감사활동 시간 협의 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이행되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li> </ul>

■ **현행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표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관련 결정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 이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임. 이때 외부감사인이 수취할 수 있는 보수에 따라 감사시간은 증감하고, 이는 곧 감사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금융감독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sup>8)</sup> 우리나라의 감사투입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개정 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감사시간을 확정 지을 수 있게,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감사위원회는 표준 감사시간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활용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에 대한 보수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제안하여야 함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한 표준 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이 지정되거나 변경 등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현저하게 미달되는 기준은 표준 시간 대비 90% 이하가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 중인 표준 감사시간은 현재 상장법인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2배 수준이라 언급됨<sup>9)</sup>
  - 2014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발표된 ‘표준 감사시간’<sup>10)</sup> 기준으로, 표준 시간 대비 90%에 미만인 상장법인은 32.49%로 집계되었고, 2017년 금감원의 보도자료<sup>11)</sup>에 수록된 기준에 따르면 16.75%에 달하는 상장법인들이 표준 감사시간의 9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됨

8)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등 현황분석”, 2017.07.26

9) 매일경제, “상장사 회계감사 시간 2배로 늘린다”, 2017.10.20

10) 한국공인회계사회, “2014년 업종별·자산규모별 평균감사투입시간(예시)”

11) 금융위원회,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2017.1.20

표6.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투입시간/표준 감사시간 미달 비율

표준 감사시간 기준 실제 감사투입시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 감사시간 (100%)	금융감독원 표준 감사시간 (100%)
90% 미만	32.49%	16.75%
80% 미만	23.35%	13.71%
70% 미만	14.21%	8.12%

## 맺음말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적절한 감사시간 투입은 감사품질 향상을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조성에 제약이 있었으며, 개정 외감법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당초 감사나 감사위원회(이하 '내부감사기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의 영향력 하에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더불어 경영진의 이해에 맞춰 가격경쟁력이 외부감사인 선임의 중요 요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음
- 금번 개정 외감법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부감사기구에 외부감사인 선임과 시간·보수 결정 권한을 이관했다는 중요한 의미와 배경을 지니고 있음
- 더불어, 직권 지정대상 회사의 범위가 확대하고 주기적 지정제도가 신규 도입됨으로써,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여할 수 없는 대상 회사의 수도 증가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외부감사인의 시간과 보수의 결정 권한은 여전히 내부감사기구에 있음을 주지해야 함

■ 직권 지정제도의 확대는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직권 지정제도가 확대되면서, 지정대상에 추가된 회사를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외부감사 표준 투입시간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등이 추가됨
- 상기 재무제표 직접 작성능력이나 외부감사시간은 내부감사기구의 직접적인 감독 영역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지정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평판이 실추되어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부감사기구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결정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크게 단축되었음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기존의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더욱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함
- 기한 내 선임하지 못한 경우도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이므로, 기한 내 차질 없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 절차, 조직 등의 제반 환경을 점검하고 조성해야 함

■ 동법의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은 감사활동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한층 수월해졌으며, 이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법 개정을 주시하여야 하는 주체가 외부감사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활동의 주체인 감사위원회이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음

## [부록] 감사인 선임 및 평가 구술 예시

### [예시1]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시 규모, 글로벌 감사 능력, 감리 지적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각 사의 제안서 제출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7년 1월 23일 외부감사인 선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2월 22일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예시2]

감사위원회는 연 1 회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 XX 조, 제 XX 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앞 각종 보고 내용, CFO의 평가결과,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담당 파트너 및 심리담당 파트너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성: 외부감사인이 제공한 감사 및 비감사 서비스 내용, 외관상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 여부 등
- 감사품질: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감사, 재무보고 내부통제감사 등에 대한 감사계획 및 실행의 적정성
- 보고: 경영진과의 의견 불일치 및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여부, 감사위원회 요구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 등 평가결과는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비감사서비스 사전 승인, 감사활동에 대한 개선요청 등 감사



## Special Report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위원회

3

#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및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삼성KPMG ACI

-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가결된 개정 외감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와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사안임
- 이에 본 섹션에서는 분식 예방과 사후적발·차원에서 국내외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및 내부고발제도 현황 비교를 통해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논의의 배경

- 금번 개정 외감법에 신설된 분식(Fraud) 방지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는, 미국의 분식 등 부정행위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무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부분임
- 부정조사협회(ACFE)<sup>1)</sup>에 따르면, 기업의 부정 적발 사례의 약 40%가 내부 제보(Tip)에 의한 것임
  - 내부 제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것이 바로 내부고발제도(Whistleblowing Program)이며,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합리적 보상이 필수적임

1)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1988년에 설립된 기업부정 감독 및 연구기관으로, 반(反)부패(anti-fraud) 관련 자료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150여 개국 7만 5천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나아가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 사안은 분식 방지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 투명한 사후처리 의무와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가 융합되면서 구성되는 것임

표1. 분식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외감법 개정 전후 비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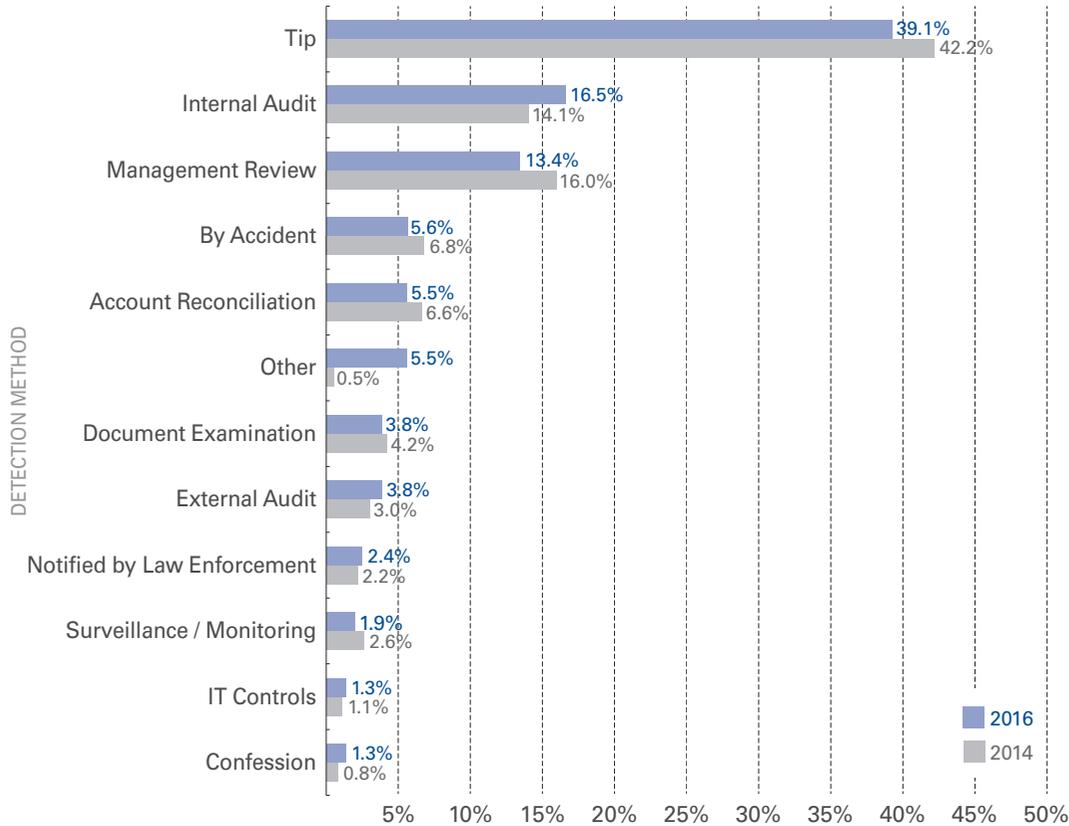
구분	현행	개정 외감법
조항	제10조	제22조 제3항~5항, 제47조 제2항
분식방지 관련 감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및 투명한 사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인인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li> <li>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 처리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li> <li>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위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li> <li>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은 대표이사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li> </ul>

표2. ‘내부고발제도’ 관련 개정 외감법 전후 비교 요약

구분	현행	개정 외감법
조항	제20조, 제20조의 2, 시행령 제 15조의 2	제41조제5호 및 제43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익명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합리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li>포상금 상한 1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li> <li>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li> <li>포상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 (외감법 시행령)</li> </ul>



그림1. 기업부정 적발 출처



Source: 2016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 이에 본란에서는 국내와 미국의 분식방지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내부고발제도’<sup>2)</sup>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 분식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무 강화 (국내 · 미국 비교)

### 미국의 분식(Fraud)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 주요 의무가 개정 외감법에 반영

■ (국내: 감사(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조사 및 투명한 사후처리) 개정 외감법의 특징으로 분식 행위 인지 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 이외에 이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미국의 관련 규정과 유사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사안임

2) 국내의 경우 ‘내부고발’과 혼용되는 용어로 공익신고가 있음. 최근에는 이러한 고발이 조직 내부 이외에 조직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보다는 공익신고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됨. 또한 ‘내부고발자’가 밀고자, 변절자 등의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신고자,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 사용하기도 함

- 기존 외감법상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 외부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 외감법에서 조사 및 시정조치한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 하게 함

표3. 분식방지를 위한 국내·미국의 감사위원회 의무사항 비교

미국 SEC Rule	국내 개정 외감법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령 등 부정행위의 징후를 감사인이 인지한 경우 회사가 실시한 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결과를 SEC에 보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Independent Special Counsel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 뒤, Independent Special Counsel의 권고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수정, 내부통제강화 등 필요한 시정조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적격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회계·법무법인 등)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li> </ul> </li> </ul>

- 또한, 회계부정 등의 사안을 전달받은 감사(위원회)의 조사·처리 권한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협조 의무가 강조되었음

표4. 분식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을 지원하는 대표이사의 의무

개정 외감법 제22조 제3항~5항, 제47조의 제2항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li> <li>•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대표이사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권한의 실질을 강화하였음</li> </ul>

■ **(미국: 분식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SEC는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게 알리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material)한 지 및 경영진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적시에 취하였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Independent Special Counsel (주로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Independent Special Counsel<sup>3)</sup>의 권고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수정, 내부통제강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수행<sup>4)</sup>

3) 검찰출신의 조사 전문가, 회계법인 포렌직팀, 법무법인, 회사의 감사등이 참여

4) Section 10A Audit requirements of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전달 받은 후 1 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SEC에 보고하고 외부감사인에 SEC 보고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sup>5)</sup>

## II. 내부고발제도

### 국내 내부고발제도의 태동

- ‘공익신고’ 제도화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처음 시행되다가 현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함)<sup>6)</sup>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발전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공공부분에 적용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공익신고의 대상이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되었음
  -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공익신고제도를 시행중이며 금번 개정 외감법 상의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근거를 제공중임

표5. 국내 공익신고제도 시행 개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li> <li>• 2015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협소한 공익신고의 적용 대상과 범위, 공익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불이익, 미흡한 보호 및 수해조치 등의 문제점 해결 노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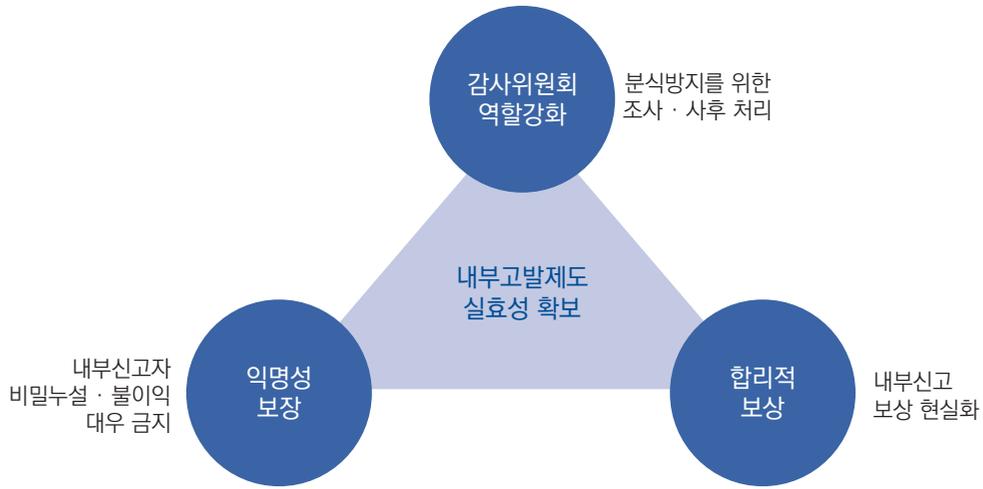
### 국내 개정 외감법 상 내부고발제도 특징

- 기존 외감법에 근거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내 보상 규모는 2006년 이래 5건 신고 · 4천만원 보상으로 그 실행이 저조한 편이며 금번 국회 심의 · 가결된 개정 외감법 상의 내부고발제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화 됨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 사안과 익명성 보장, 합리적 보상 고려 사항의 융합으로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계기를 맞게 됨

5) Section 10A (3) Notice to Commission; response to failure to notify

6) 위계질서가 철저한 한국 사회에서 행해질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 법적한도가 모호하다는 평이 있어 일각에서는 법적 실효성에 대해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그림2.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삼각구조



■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 외감법 신설조항 에서는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한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한 것이 주목할 사안임

표6. 개정 외감법 상에서 익명성 보장관련 내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sup>7)</sup> 이외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sup>8)</sup>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sup>9)</sup></li> </ul>

■ **(합리적 보상 고려)** 내부고발과 관련한 보상 포상금은 만족할 수준으로 포상금 규모를 상향함

- 포상금은 2017년 5월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sup>10)</sup>

7) 개정 외감법 제41조(벌칙)

8) 개정 외감법 제47조(과태료)

9) 개정 외감법 제43조(벌칙)

10) 외감법시행령 제15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 미국 내부고발제도 수립 및 운영

■ 미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하는 대표적 법률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이하 ‘SOX’)과 도드-프랭크법임(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미국은 이미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익명성 보장, 합리적 보상과 감사(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조사 및 투명한 사후처리 절차를 성실하게 실천중임
- 특히 도드-프랭크법의 경우 국내 대비 늦게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 내부고발 포상 실태: 2011년 이래 1만 4천건 · 1억3천만 달러 보상

표7. 미국의 대표적 ‘내부고발제도’ 관련 법률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상장기업과 증권회사에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한 SOX가 제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X는 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된 공개기업(및 금융정보가 그 회사의 통합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계열사)과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근로자, 독립계약자, 임원 등이 SOX,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주주에 대한 사기와 관련된 연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부공익신고(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하거나, 조사를 돕거나, 소를 제기하였거나, 증언하였거나 해당 절차에 참여했다는)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정직, 위협, 모욕, 기타 근로조건에 반하는 방식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1)</sup></li> </ul> </li> <li>• 또한, 감사위원회가 회계, 내부회계통제, 감사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접수, 보관 및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 (Sec.3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조항에는 의심스러운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하여 직원이 제기한 기밀 · 익명 제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감사위원회가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li> </ul> </li> </ul>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등 공익신고보호를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청구법, 사베인-옥슬리법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li> <li>- 증권감독위원회와 선물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sup>12)</sup></li> <li>- 소비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근로자가 동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sup>13)</sup></li> </ul> </li> </ul>

11) 18 U.S.C. § 1514A(c)

12) Section 748 of the Dodd-Frank Act: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정부가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13) Section 1057 of the Dodd-Frank Act

**맺음말**

■ 금번 개정 외감법 국회 심의·가결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 절차 강화 사안과 이와 연계된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감사(위원회)는 실무적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 향후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사의 부정위험 관리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임
  - 더불어, 국내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검토와 외부감사인 감독을 주 임무로 하며 내부감사보고나 내부자 고발제도(Whistleblowing)의 중요한 소통창구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임
  - 내부고발제도의 성공여부는 (1) 분식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및 투명한 사후처리,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3) 합리적 보상에 달려있음
  - 참고적으로, 향후 감사(위원회)가 내부자신고제도 감독 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부록1)를 참고 바람

**[부록1] 감사(위원회)의 내부자신고제도 감독을 위한 체크리스트<sup>14)</sup>**

주요 질의 사항	표시
● 내부자신고제도는 문서로 기록되며 조직 전체에 전달되고 있는가?	✓
● 내부고발정책은 임직원이 범법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고 용인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
● 내부자고발제도는 협의 과정을 통해서 채택되었는가? 그리고 경영진과 직원들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 임직원 및 다른 사람에 의해 제기된 우려사항이 합리적으로 기간내에 대응되었는가?	✓
● 내부고발자가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단계가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장하는 진행절차가 있는가?	✓
●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단계가 합리적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진행절차가 있는가?	✓
● 내부자신고제도에 대한 성공사례는 공개되는가?	✓

14) KPMG UK Audit Committee Institute's reference

주요 질의 사항	표시
•우려가 제기됐을 경우 경영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경영진은 임직원 및 다른 사람이 양심선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
• 내부자신고절차의 일환으로 독립 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고려가 이뤄졌는가?	✓

## [부록2] 회계부정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 사례

### ■ 사례 1 : 도이체뱅크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

- 리스크 관리직원 벤-아르치는 도이체뱅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정기에 대규모 파생상품 포지션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아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미국 SEC가 2015년 이 은행에 5천500만 달러(약 6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일조함
  - 2016년 SEC는 벤-아르치<sup>15)</sup>와 도이체뱅크의 전직 트레이더인 매트 심슨 등 두 사람에게만 도드-프랭크법에 의거 각각 825만 달러(약 92억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포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3번째로 많은 금액 규모였음

### ■ 사례 2 : 홈스트리트은행의 회계부정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사례

- 해당은행은 부적절한 회계처리 혐의로 SEC의 조사가 시작되자, 내부 고발한 직원을 색출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 포상금 자체를 포기하거나 내부고발 시 퇴직금을 못 받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여 SEC로부터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

15) 벤-아르치는 본인 몫의 SEC의 포상금을 거절하여 다시 한번 화제를 낳았음. SEC가 부과한 벌금은 주주들이 아닌, 은행 임원 개인이 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SEC와 도이체뱅크 간부들의 상호 인사 교류가 회계부정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배경이라고 주장함

##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지원조직 공시 현황

삼성KPMG ACI

-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회의 안건을 전달하고 중요한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기업 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상장법인 1,778사 중 467사(26.3%)가 사외이사 지원조직이 존재한다고 공시하였지만, 이 중 이사회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한 경우는 20사에 불과
- 사외이사 지원조직이 있다고 공시한 기업 중 조직명이나 담당자 성명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경우도 4사 중 1사 수준으로 나타남
-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가 권고되며, 관련 정보의 공시도 사업보고서 · 이사회운영규정 · 홈페이지 등 다원화할 것이 권고됨

### 논의의 배경

- 사외이사는 ‘비상근’인 회사의 ‘외부인’이라는 본질적 특성 상 사내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 수 령에 한계가 있고, 이에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것 이 바람직함
-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안건을 전달하고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전달하 는 역할 뿐 아니라, 보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조직이 사외이사가 고충을 소명하거나 공식적 이 사회 회의 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별도 채널로서도 기능할 수 있음
  - OECD, 유럽부흥개발은행<sup>1)</sup>, ICSA<sup>2)</sup>는 회사 내 지원조직(Company Secretary)의 핵심역할 중 하 나로 ‘사외이사와 회사 간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언급하기도 함<sup>3)</sup>

1)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2) Institute of Chartered Secretaries and Administrators

3) OECD EBRD ICSA, “Role of Company Secretary in Bank Governance”, 2008.4.30.

- 국내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sup>4)</sup>하고 있긴 하나<sup>5)</sup>,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는 모범규준에서 권고되고 있는 수준임<sup>6)</sup>

■ 표1.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권고 조항

‘II. 이사회’ > ‘3. 사외이사’ > 3.4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략) 또한 기업은 사외이사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 반면,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상장회사가 회사 내 지원조직(secretary)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sup>7) 8)</sup>
  - 또한 영국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모든 이사가 회사 내 지원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원조직 구성원의 선·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함<sup>9)</sup>

##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지원조직 공시 현황

- 국내 상장법인 중 사외이사 지원조직<sup>10)</sup>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조사대상 1,778사 중 467사(26.3%)로 나타남

- 유가증권시장은 718사 중 256사(35.7%), 코스닥시장은 1,060사 중 211사(19.9%)임

- 이 중 이사회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0사(코스닥시장에는 없음)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존재를 공시한 전체 상장사의 4.3%에 불과함

- 달리 말해,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은 IR부서, 경영지원/경영전략부서, 법무부서, 기획부서, 재경부서 등 다른 주된 업무분장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사외이사 및 이사회 관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

5) 내부감사부서가 존재하는 기업 중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조직이 편제된 비율은 7%에 불과 (삼정KPMG ACI, “2016년 상장법인의 감사보조조직 편제와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감사위원회 저널」 2호, 2017.5)

6)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와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명시하였으나 동 규준들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사실상 폐지되었음

7)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 271항

8) 인도도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에서 모든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내 지원조직 설치를 강제함(203항). 해외에서는 회사 내 지원조직의 역할로 이사회 업무 지원 뿐 아니라 법규 준수(Compliance) 확인, 주주와의 소통 등 다양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9)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B.5.2.항

10) 이사회 업무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및 부서 포함

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였음

- 심지어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는 밝혔으나 조직명이나 담당자 성명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도 467사 중 114사(24.4%)에 달하였음

표2.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지원조직 공시 현황

시장 구분 (시장 내 기업 수)	유가증권시장 (718사)	코스닥시장 (1,060사)	전체 상장사 (1,778사) <sup>11)</sup>
사외이사 지원조직 공시 기업 수 (개사)	256	211	467
각 상장시장 내 비중	35.7%	19.9%	26.3%

■ 한편, 467사 중 95.3%에 해당하는 445사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사외이사 지원 조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였고,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공시 채널은 이사회규정 및 사외이사 규정(34사, 7.3%), 조직도(9사, 1.9%), 홈페이지(5사, 1.1%) 순으로 나타남

- 3개 이상의 출처에 공시한 기업은 4사, 2개 이상의 출처에 공시한 기업은 22사로 나타남

표3.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지원조직 공시 출처별 현황 (중복 허용)

공시 출처 시장 구분(지원조직 공시 기업 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홈페이지	이사회규정 및 사외이사규정	조직도
유가증권시장 (256사)	241 (94.1%)	5 (2.0%)	27 (10.5%)	9 (3.5%)
코스닥시장 (211사)	204 (96.7%)	0 (0.0%)	7 (3.3%)	0 (0.0%)
전체 상장사 (467사)	445 (95.3%)	5 (1.1%)	34 (7.3%)	9 (1.9%)

(\*) 괄호 안 비율은 각 시장 내 사외이사 지원조직 정보를 공시한 기업 중 비율

## 맺음말

■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일정을 알리고 안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대다수 기업에 (전담은 아니더라도) 존재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나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시해 놓은 경우는 비교적 드물었음

11)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요건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상장된 지 1년이 지난 상장법인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회생절차 중인 기업 제외

- 공시된 경우에도 주요 업무가 따로 있는 기존 부서나 담당자가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사회사무국과 같이 이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사외이사가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홈페이지 내 기업지배구조 섹션, 이사회 운영규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외이사 지원조직의 명칭 또는 담당자를 공시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 권고됨

### [부록] 2016년 말 기준 이사회사무국 보유 기업 목록

KB금융	SK이노베이션
LG	SK증권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교보증권
LG이노텍	삼성화재해상보험
LG전자	신한지주
LG하우시스	우리은행
LG화학	지투알
SK	포스코대우
SK네트웍스	한국전력공사

(\*) 기업명 기준 오름차순 정렬

#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과 상장법인 참여 현황

## - 새로이 공개된 감사기구 정보 중심 -

삼정KPMG ACI

###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취지

-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 라는 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임
-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시장평판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공시되어야 할 정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상법상 지배구조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최소한의 핵심항목(10개)으로 구성됨
- 원칙적으로 공시의 참여는 자율이나, 참여한 회사는 공시된 내용의 진위를 담보해야 함

표1.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 10대 핵심원칙

구분		핵심원칙
주주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구성 및 선임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핵심원칙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 및 보상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용은 공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참여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첫 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74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70개사가(9.36%)가 해당 제도에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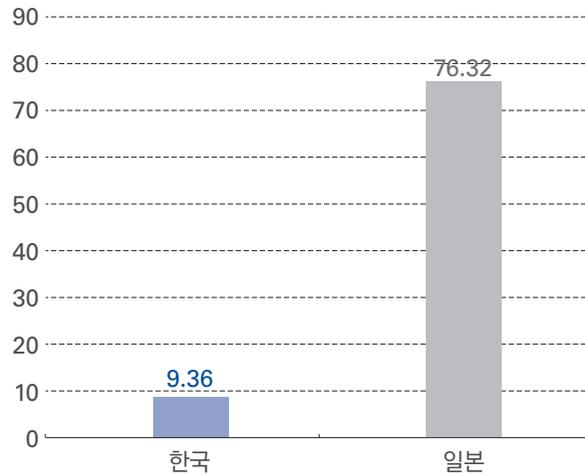
- 다만, 보고서 제출 회사 70개사(100%) 중 기 발행 보고서로 동 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39개사(51.71%)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동 제도에 참여한 회사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 이후 발간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참여율이 약 76.32%(1934개사 중 1476개사)로 상대적으로 높음<sup>1) 2) 3)</sup>
- 또한 Comply or Explain 방식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별도의 설명(Explain)을 하지 않은 회사들이 상당 수 발견됨
  - 이러한 점은 차기년도 보고서 제출 때 필히 보완되어야 할 것임

1) TSE 1부 상장사 기준

2) How Listed Companies Have Addressed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TSE, 2016년 1월

3) 上場會社數の推移, JPX, 2015년

■ 표2.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첫해 성과 비교(한국 Vs. 일본), 단위%<sup>4)</sup>



Source: JPX , 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삼정KPMG ACI 가공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반 강제(상장규정 등에 의한 제재)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용의 진위 등을 관리하는 주체 또한 명확한 편임

- TSE(Tokyo Stock Exchange)의 경우 발간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별도로 통계화 하여, 회사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함
  - 보고서를 공개한 회사 중 63%는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90% 이상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됨
- LSE(London Stock Exchange)의 경우 상장유지 조건에 자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제재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음
- NYSE(New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상장 후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며, 해당 대상은 전체 상장사임

4) 일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 발간된 수치를 산정함

표3. 주요국의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운영 소개

구분	미국	영국	일본	
상장공시규정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 부여	상장유지조건에 모범규준의 CoE공시의무 명시	상장시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의무 (미흡한 경우 상장불허 및 변동시 제출의무 부여)	
모범규준 등	관리주체	지배구조위원회 (거래소 관할)	감독기관(FCA)	지배구조위원회 (거래소 관할)
	구성방식	3개 섹션, 7개 항목	5개 섹션	5개 섹션 13개 항목
	주요내용	이사회, 경영진, 주주	리더십, 효율성, 회계책임, 보상, 주주관계	주주권리, 주주평등, 이해관계자, 정보공시 투명성,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적용대상	모든 상장기업	모든 상장기업	모든 상장기업
	위반제재	없음	금전적 제재,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	없음

Source: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설명, 한국거래소

##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하여 새로이 공개된 감사기구 정보

- 동 제도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감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 외 공개된 정보는 ①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② 감사위원회 정기개최 여부 ③ 감사위원 평가 내역 ④ 감사위원회 내 위원장 임기로 조사됨
- 조사 대상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한 70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응답한 회사 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제도의 취지에 맞춰 공시한 내용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 일본의 경우 보고서를 발간한 과반 이상의 회사들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90% 이상 충족시켰으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왜 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구술을 비교적 상세히 공시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관련 정보 공개를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음
    - 예컨대, 감사위원 평가 내역 부분에서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감사위원 평가를 계획하거나 실시한 회

사가 있었으며 해당 응답은 감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한 의미 있는 정보로 판단됨. 그 외에도 감사위원 평가지표 등을 공개하는 회사가 상당하였음

- 이러한 정보 공개들은 향후 경쟁 업종에 속한 회사들의 보고서 발간 및 실제 제도 운영 등에 참고 될 것으로 예상함

■ 표4.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구분	회사 수	비율
전문공개	32개사	51.61%
부분공개	18개사	29.03%
미공개	12개사	19.36%

Source: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삼정KPMG ACI 가공

■ 표5. 감사위원회 정기개최 여부

구분	회사 수	비율
정기개최	40개사	64.52%
미공개	22개사	35.48%

Source: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삼정KPMG ACI 가공

■ 표6. 감사위원 평가 내역

구분	회사 수	비율
개별위원 평가공개/예정	5개사	8.06%
외부기관 평가공개/예정	2개사	3.23%
시행여부/지표공개	25개사	40.32%
미공개	28개사	45.16%
기타	2개사	3.23%

Source: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삼정KPMG ACI 가공

■ 표7. 감사위원회 내 위원장 임기 공개

구분	회사 수	비율
공개	8개사	12.90%
미공개	51개사	82.26%
기타	3개사	4.84%

Source: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삼정KPMG ACI 가공

##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삼성KPMG ACI

### 질의 내용

- 상장법인이자 지주회사인 A 홀딩스는 A 홀딩스(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보유한 법률적·실무적 권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 이에 더불어, 자회사 외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가?
-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에 따른 권한이 있는가?

### 검토 결과

- 국내 법률에서 언급하는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에 의거 모회사의 현황을 자회사의 영업과 연결 지어 파악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적절한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회사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조사까지 허용함<sup>1)</sup>
    - 상법 제415조의2 제7항에 의하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에 관한 상법 제412조의5가 감사위원회에도 준용되므로, 감사위원회 역시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자회사를 상대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로 하는 모회사 감사위원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또한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조사권 및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의 여부”, 2016.1

### 표1.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 권한 관련 법률

####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은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후략)

### ■ 한편, 자회사 이외의 관계회사에 대한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며, 상법 제412조의5에도 불구하고 모회사나 지배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의 ① 정관 개정 또는 ②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감사위원회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은 분명 한계가 있음

### 표2.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관계회사 감독 시 예상되는 한계점

#### ① 정관 개정

- 지배회사나 모회사가 자회사 내지 관계회사의 지분을 과반 넘게 가지고 있다 해도, 수직적인 영향력(인사권, 경영의사결정 등)을 정관화하기 어려움
- 주주총회는 표결에 의해 다수파와 소수파가 모두 참여 가능하나 정관 변경 확정 후에는 소수파가 이를 변경하기 매우 어려움
- 지분율을 과반 넘게 보유한 상황에서도 상기 이슈가 내재되어 있어, 그에 미달하는 지분율을 가진 관계회사에 대해 정관 변경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리스크가 많은 제안으로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②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 위에서 설명한 정관개정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시적으로 정관 개정이나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모회사 내지 지배회사가 자회사 내지 관계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업권의 특수성(금융업)을 고려해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된 것임
- 비금융권에서 모회사 내지 지배회사가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경영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이를 행사하기 위한 정관이나 규정 개정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쪽에서 주로 선호함
-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 받는 측에서는 지분구조 해소 등을 통해 영향력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기에, 별도의 정관이나 규정 등을 고수할 유인이 크지 않음

### ■ 해외 자회사에도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회사에 대하여도 본조가 적용됨. 자회사 자체의 준거법은 자회사가 소재하는 외국법이므로 당해 외국법 또는 당해 외국과의 조약 등으로 본조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본조에 의하여 감사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sup>2)</sup>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의 검직금지(자회사에 외국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7.4

## 이사회 ·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 평가를 위한 제언

삼성KPMG ACI

### ■ KPMG Board Leadership Center(BLC)는 최근 이사회 ·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 평가에 대한 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sup>1)</sup>

- 변화무쌍한 사업환경에서, 이사회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이사회 평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음
- 효과적인 성과평가는 이사회,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 개인 모두가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이행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 ·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 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해당사항을 권장하고 있음

#### ■ 표1.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이사회 ·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 평가 관련 조항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II.이사회"

4.4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의 활동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의 공개는 이사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개 자료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후략)

5.3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중략)이사회내 위원회는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중략)

#### • 위원회의 연간 활동 및 성과평가

(중략)

1) KPMG BLC, "Enhancing evaluations for boards, committees, and directors", 2017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II.이사회" (계속)

8.1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결과는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그들이 직무수행에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8.3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중략) **보상위원회는 사전에 마련한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이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KPMG의 본 보고서는 이사회 ·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 평가의 대상, 항목, 주체, 방식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표2. 이사회 · 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 구성원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li> <li>•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규정에서 연간 평가를 요구하는 주요 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li> <li>•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li> <li>•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li> <li>• 이사회 구성원</li> </ul>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상장규정, 지배구조 원칙, 이사회·위원회 운영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운영의 효과성: 정보 공유, 안건 내용, 구성원 간 ·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와 2단계에서의 평가 항목 포함</li> <li>• 이사회 문화</li> <li>• 이사회 구성원 활동 수준</li> </ul>
평가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구성원(자기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구성원(동료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와 2단계에서의 평가 주체 포함</li> <li>• 고위 경영진 등 이사회와 긴밀한 교류를 하는 외부자</li> </ul>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를 주관하는 임원에 의한 개별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 자문을 받아 평가모델 고도화<sup>2)</sup></li> </ul>

■ 상기 고려사항을 구체화하여 평가의 기본 틀이 확정되면, 다음 질문들을 활용해 평가 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자문을 받기 전 법무팀의 검토 필요

표3.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이사회 구성원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시 질문 리스트

- 
- 효과성과 합목적성을 구분하고 있는가? 예컨대, 구성원들로부터 존경 받고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경영환경 변화로 그 전문성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 이사회와 특성과 니즈를 고려해 맞춤형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평가 절차는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이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하는가?
  -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 사후적으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일상적으로 노력하는가?
  - 이사회 평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평가 절차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평가 담당 임원은 깊은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진솔한 성찰과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사회 구성원 개인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가?
  -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는가?
-

# 2017 Global CIO Outlook: Navigating Uncertainty

## 불확실성 시대에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CIO

삼성KPMG ACI · ERI

■ 본 보고서는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CIO의 입지를 반영하고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IO의 현실을 그린 보고서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CIO가 직면한 최대 과제와 이에 따른 우선순위 전략에 초점을 맞췄으며, 글로벌 기업 IT 리더들의 경영 전략과 고민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기업이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음

■ 설문조사 대상 및 분야: 글로벌 86개국 4,498명의 CIO 및 IT 리더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4월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음

- 금융 서비스, 유통, 제조업, 에너지, 유틸리티, 건설, 방송 · 미디어, 광고, 레저, 헬스케어, 제약 산업부터 정부, 교육, 비영리 부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다수 CIO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모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금번 보고서는 차별성을 지님

표1. 'KPMG CIO Survey 2017: Navigating Uncertainty' 주요 내용

### I. CIO의 우선순위

● 정치/경제/경영 환경의 변화

- 64%의 CIO들은 정치, 경제, 경영 환경이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기술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고 응답함

●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

- CIO의 25%는 3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축소시키고 52%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첩성(agility)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
- 아울러 CIO의 45%는 사이버 보안에 추가 투자를 하며, 39%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업무를 지속하겠다고 답하고 있음

● CIO의 전략적 영향력 및 혁신의 선도

- 설문조사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70% 이상의 응답자들은 CIO의 전략적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응답함

- 더불어, CIO는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전략적 혁신가로 거듭나고 있음. 응답자의 60%는 CIO가 조직에서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리더로서 보다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응답함

#### ● 프로젝트 성과

- 최근 IT 프로젝트가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과도한 낙관주의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응답자들의 46%는 IT 프로젝트의 주 실패 원인을 '낮은 책임감(46%)'이라고 응답함

## II. 인력, 기술력 및 역량

#### ● 여성 IT 리더의 위상 증대 모색

- 2017년의 여성 시니어 IT 리더십은 지난해와 동일한 9%로 여성 IT 리더십은 큰 진전이 없었으나, 응답자의 35%는 자사 조직이 공식적인 다양성(Diversity) 존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규모 조직일수록 존중 프로그램 시행도가 높았음(72%)
- 여성 CIO는 지난 해 남성 CIO보다 급여 인상률이 높았음 (여성 42% vs 남성 32%)

#### ● 기술력의 부족 토로

- 응답자의 60%가 IT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부족한 기술은 빅데이터 및 애널리틱스(42%), 비즈니스 분석(34%), 전사 아키텍처(34%)으로 꼽힘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IO 중 68%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며, 타 지역의 CIO에 비해 더 많은 우려를 표했음

#### ● 인력 확보

- 44%가 기술 관련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는데 이같은 추세는 지난 7년간 지속되어 왔음

## III. 디지털 활용 현황

#### ● 디지털 전략 수립 증가

-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의 비율은 3년 내 52% 상승하였음
- 방송/미디어(56%), 기술(56%) 및 통신회사(52%)들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데 우위를 보인 반면 제조(26%), 유틸리티(30%), 건설(30%) 부문의 디지털 비전과 전략 수립은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조직 내 최고디지털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 수 증가

- 응답자의 25%만이 현재 조직에 CDO(Chief Digital Officer: 최고디지털책임자) 또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CDO의 수는 3년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 디지털 혁신 촉진

-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술 기관 등 혁신적인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그 뒤를 이음

#### ● 디지털 혁신의 과제

- 디지털의 성공적 혁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조직 내부의 저항(43%)을 극복하는 것이 예산 재원 확보(25%)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 조직 내부 저항이 높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조직원들이 새로운 변화로 인해 자신의 익숙한 업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IV. 기술 경영 현황

##### ● 민첩성과 대응력

- IT 리더들은 민첩성과 책임감을 개선하기 위해 '민첩성 높은 방법론을 구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더 많은 서비스형(as a Service) 솔루션을 구입'해야 한다는 방안이 19%로 그 뒤를 이음

##### ● 클라우드 기술 / 지능형 자동화 / 디지털 노동 효율성

- CIO의 34%는 이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및 CA(Cognitive Automation: 인지 자동화) 등의 디지털 노동에 이미 투자 했거나 2017년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 디지털 노동 활용이 품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힌 CIO도 27%에 이룸
- IT 리더의 34%는 이미 디지털 노동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업군으로는 제조(45%), 유틸리티(43%), 운송(41%), 금융서비스(41%), 통신 (38%), 제약(38%) 순임
- RPA에 적정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 계획 중이라고 밝힌 CIO는 46%, 상당 수준의 투자로 답한 CIO는 15%였으며, CA의 경우 적정 수준의 투자는 30%, 상당 수준의 투자는 11%인 것으로 응답함

##### ● 사이버보안과 IT예산, 아웃소싱

- 지난 4년 동안 '주요'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 조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2017: 32%, 2016: 28%, 2015: 25%, 2014: 22%)
- 사이버 공격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었던 부문은 정부(44%) 및 유틸리티(44%)였으며, 그 뒤를 레저(42%), 교육(42%), 통신(39%), 제약(39%), 운송(37%), 방송·미디어(35%), 건설(35%)인 것으로 밝혀짐
- IT 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79%의 CIO가 올해 IT 예산이 유지 또는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절반이 아웃소싱 투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여전히 아웃소싱은 모든 조직에게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됨

#### V. CIO의 커리어

- 58%의 CIO는 5년 또는 그 미만을 본인의 직무수행 기간으로 예상하였으며 39%의 CIO가 자신의 직업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여 3년 내 최고치를 기록 중임
- 자선/비영리 분야의 CIO 만족도는 12%가 하락했으며 해당 분야의 CIO들은 올해 이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난해 CIO의 33%가 기본급이 인상되었다고 밝혔으며 성과급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3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삼성KPMG ACI

- 삼성KPMG는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0여 명의 상장 법인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3회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함



- 현 정부와 20대 국회가 강조하는 감사기구 관련 법제도 개정의 핵심은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 및 균형의 역할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임
-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사위원회 제도 및 역할 모색'을 주제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1. '제3회 삼성KPMG ACI 세미나' 주요 내용

**인사말** 삼성KPMG 김교태 CEO

-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규가 제·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중임
-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함

**Session I** 「강화되는 감사기구에 대한 법제도 환경」: 임종룡 前 금융위원장

-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는 감사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율 대폭 강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회계 투명성 강화’ 등으로 정리해 소개함
  - 본인은 금융위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 이것들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기능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새로 반영된 '시장에 의한 감사기능'도 이에 해당함
  - 스튜어드십코드와 감사위원회는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견인하는 쌍두마차이며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통해 자본시장이 보다 공정해지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임
  -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이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램
  -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행동원칙, 그리고 기업의 회계정보 모두가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감사위원회가 있음

**Session II** 「감사위원회 Best Practice 연구」: 김일섭 한국FPSB 회장

- 회계전문가이자 포스코 등에서 감사위원장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사례를 공유함
  - 국내 상장법인은 연평균 4회 회의 개최로 감사위원회 활동이 미진하며 생산시설, 자회사, 해외 자회사 등을 단독 방문하거나 비공식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일이 요구되는 시점임
  - 삼성KPMG ACI와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한국 연 평균 3.93회(2016년 기준), 미국 7.9회(2014년 기준)로 나타남. 감사위원회가 안건을 부결 시킨 횟수도 한국은 0.5%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27%로 나타남. 미국 상장법인 이사의 47%는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이 매우 잘 받아들여진다”고 응답함
  - 최근 회계 부정사건도 감사위원회가 미리 현장을 찾아 샅샅이 살펴보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임. 더불어,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감사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규정에는 경영진의 협조를 명시해야 함
- 포스코 사례를 인용해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함
  - 포스코는 올해 감사인 선임부터 감사를 받는 주체인 재무실이 외부감사 제안서를 접수하는 것에서 내부감사실 주관으로 변경함
  -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실장, 정도경영실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외부감사 후보를 평가하고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에서 감사위원회의 평가와 선임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었음
  -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보수·시간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개정 외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최적의 사례임

**Session III 「Triangle of Collaboration: Audit Committee, External Auditor & Internal Audit Function」:**  
삼정KPMG ACI 리더 김유경 상무이사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조직의 3자 간 협업체계(Triangle of Collaboration)를 강조함**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업이 회계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감사위원회 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보수가 현실화 될 필요성을 제기함**
  - 지난해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4,460만원으로 미국 300대 주요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인 2 억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음
- **국내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내부 감사 실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 정부가 수주산업에만 적용했던 핵심감사제도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확정했지만, 국내법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만 내부 감사 실무조직 설치 의무화를 규정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감사조직이 없거나(20%) 경영진 직속(93%)이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
  - 금융감독원은 기업 경영진을 빼고 기업의 내외부 감사조직끼리만 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실제 이를 규정에 넣은 기업은 KB금융지주 등 극소수에 불과함
- **더불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인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review)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도입 후에도 연이은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했음
  -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수준으로 대형 분식사건이 사라지는 등 제도가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이렇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을 문서화하면 만약의 분식이나 소송 사건에서 감사위원을 보호 할 수 있음

**Session IV 패널 토의 「국내 적용 가능한 감사기구 운영방안」:**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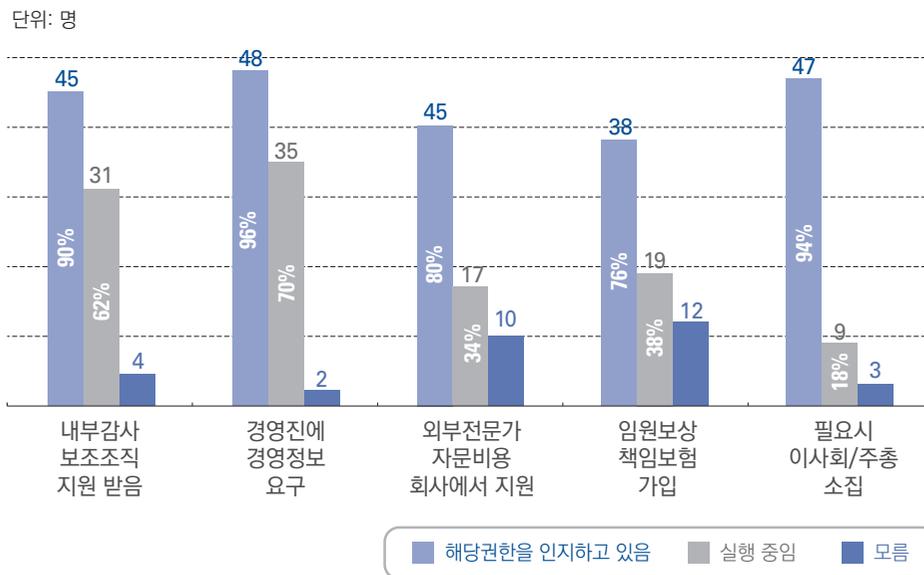
- **국내 적용 가능한 감사기구 운영 방안에 대해 패널 토론을 진행 함**
  - 한중수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성규 연세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국내 기업 환경에서 감사(위원) 역할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함
- **손성규 교수: 감사위원회에 있어 document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맡겨진 업무도 꼼꼼히 챙겨야 하지만 회의록 작성 직원에게도 감사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빠짐없이 회의록에 남겨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고 언급 주셨는데 감사위원 모두가 숙지해야 할 내용임
- **김성용 교수: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조함**
  - 모든 감사위원이 회계 전문가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financial literacy"를 갖출 것을 요구할 필요는 있음
  - 이는 NYSE 규정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Nasdaq에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비롯한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지현미 교수: 내부감사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함**
  -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내부감사인력의 육성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부감사조직의 설치와 인력육성은 감사기구의 위상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맺음말** 삼성KPMG 신경섭 감사부문 대표

- 회계 투명성과 지배구조 제고를 위해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기대하는 바램은 점차 커져 가고 있으며, 단순히 감사기구 보유에 대한 근거가 아닌, 실제 실효성을 타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 본 세미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삼성KPMG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비롯한 기업의 내부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진일보된 협업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시금석이 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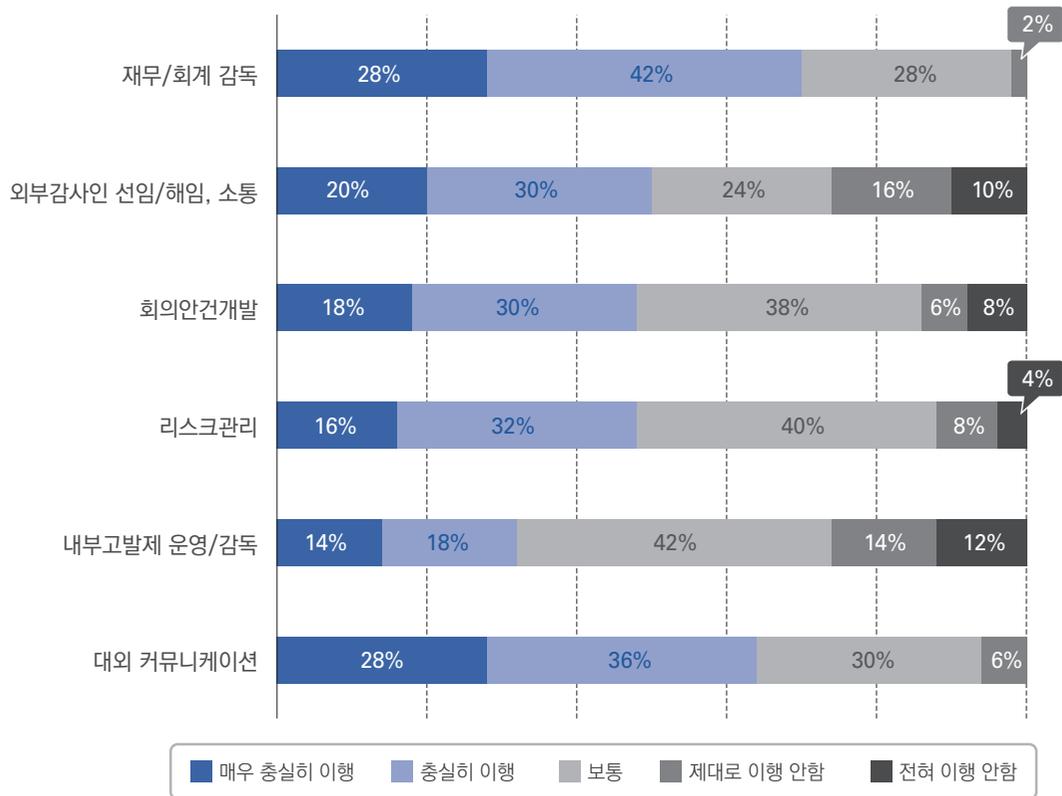
**주요 설문결과<sup>1)</sup>**

- 설문에 참여한 감사(위원) 중 42%가 재직기간이 1~3년이라고 응답
- 감사위원회 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0분~1시간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에 달함
- 감사(위원회) 활동에 연간 투입하는 시간은 20~50시간이라는 응답이 27%, 20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는데, 200시간 이상 투입한다고 답한 경우는 상근감사로 추정됨
- 감사(위원회)의 법적 권한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행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 제3회 삼성KPMG ACI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임

■ 설문 결과, 내부고발제도의 운영·감독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역할이 특히 취약하며 외부감사인 선임·해임과 커뮤니케이션, 회의안건 개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역할도 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Audit Committee Institute

### 감사위원회 저널 저자

**신경섭 감사부문 대표**

T. +82 2 2112 7631

E. kyungsupshin@kr.kpmg.com

**김유경 ACI Leader, 상무이사**

T. +82 2 2112 0639

E. youkyoungkim@kr.kpmg.com

**강환우 수석연구원**

T. +82 2 2112 7728

E. hwanwookang@kr.kpmg.com

**이민형 책임연구원**

T. +82 2 2112 7854

E. minhyunglee@kr.kpmg.com

**엄수진 책임연구원**

T. +82 2 2112 7608

E. sujineom@kr.kpmg.com

### ACI 자문위원

**김일섭**

한국 FPSB 회장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현미**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Audit Committee Institute

삼정KPMG ACI는 재무보고 감독, 감사품질 확보, 리스크 관리, 국내외 규제 준수 등 감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감사위원회 및 감사에게 제공하고, 감사위원·감사·사외이사·기타 이사회 멤버 간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와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활동 및 간행물 발행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Vol. 04 | October 2017 (통권 제4호)

발행인 삼정KPMG | 지은이 삼정KPMG ACI | 제작·인쇄 서광기획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06236)

전화 (02) 2112-7728 | 팩스 (02) 2112-3680 | 이메일 kr-fmsamjongkpmgaci@kr.kpmg.com

삼정KPMG ACI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kr/ko/home/services/aci.html>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본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